의안번호	2106951
의 뢰 인	양금희의원
회 답 일	2020.09.1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 치료비지원(안 제27조 신설)

○ 정부는 중대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학 등의 대학생이 보험가입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Ⅱ.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정부가 중대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학 등의 대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함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중대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 대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대학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2]하고 있으며, 연구실사고로 인한 의료비 보상금액은 1인당 최소 5,000만원 이상임

- (요양급여) 보험급여 중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3]
- (요양급여의 보상금액)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로, 1인당 5,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최고한도를 정함[4]

○ 연구실사고로 인한 의료비가 1인당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치료비 지원은 의료비가 1인당 최소 5,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간 대학의 연구실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비 보상금이 5,000만원 이상인 사고는 연간 1~2건 발생하였음

[표 1] 대학의 연구실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보상 현황: 2015~2019년

(단위: 건)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5천만원 미만	91	94	104	153	120	562
5천만원 이상	1	2	1	2	1	7
합 계	92	96	105	155	121	56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②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의 청구를 받아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요양급여: 최고한도(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
2~5. (생 략)

❑ 의료비 보상금이 5,000만원 이상인 사고가 연간 1~2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치료비 지원 기준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연구실사고 1건당 피해 대학생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 1인당 지원금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하나, 사고 건수가 연간 1~2건인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 지원금이 연평균 1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과 장	이진우
추계세제분석관	유희수
연 락 처	02-6788-4740
	hsyoo@nabo.go.kr